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70호 2012. 1. 18.(수)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4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66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 인력 채용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상황실을 말한다.

제3조(주관) 회의실은 총무과장이 주관 운영한다.

제4조(사용제한) ① 회의실 사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 한한다.

② 민간단체 등 외부 기관이라도 공공 목적의 회의·행사 등의 경우에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절차)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외부 기관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

실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결정 통지) 제5조에 따른 회의실 사용 신청을 접수한 총무과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한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긴급한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사용 중 건물이나 실내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한 경우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 중 사고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행사 시설) 회의·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은 사용자가 설치한다.

제9조(준수사항) 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실 사용이 결정되면 사용자는 회의실을 인계받고 실내시설 및 물품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사용자는 회의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총무과장의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건물이나 실내시설 또는 물품을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며, 이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허가 없이 회의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취소 통보)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상황실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당하지구 33블럭 1,6로트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성은건설(주) 노길웅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3블럭 1,6로트
 - 나. 대지면적 : 2,260.2m²
 - 다. 연 면 적 : 4,510.16m²
 - 라. 사 업 비 : 9,930,281,187원
 - 마. 사업규모 : 지상5층 1개동 64세대
4. 사업기간 : “변경사항 없음”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사항
 - 사업비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2012 - 66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 공고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부분

GIS DB(하수, 도로, 녹지, 교통 분야)입력 전문기술자

2. 채용기간

채용일 ~ 2012년 12월31일

3. 모집인원 : 1명

4.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1991.01.01이전 출생자
- 나.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거주
-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라. 다음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
 - 1) GIS 관련학과 2년 이상의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 GIS관련학과 : 지리정보·토목·지적 관련과
- 2) 정보처리산업기사소지자

5. 가점부여

다음 자격 조건 중 최고 점수 1중 하나

- 가. GIS 관련프로젝트 및 연구 수행경험 1년 이상인자 (+4점)
- 나. GIS S/W, ORACLE 교육이수자(+1점)
- 다. CAD 자격증 소지자 (+2점)
- 라.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 기사, 토목산업기사이상 소지자(1개이상)
- 마. 동일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1년이상 ~ 2년미만 : 2점
 - 경력 2년이상 : 4점

6. 전형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A4 1장) 1부
- 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 지참
- 마.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바. 주민등록 등·초본 1부

8.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제출기간 : 2012.01.17(화) ~ 2012.01.20(금)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10.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치수관리팀

11. 면접일 : 2012. 01. 27(금) 10:00

※ 서류합격자 면접 및 장소 개별통보

12.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01. 30(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13. 채용관련 문의처 :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032-560-453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서구구청소식지의 일반 독자를 명예기자로 선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과 함께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명예기자의 구성 및 인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 : 032-560-4143, 팩스 : 032-560-2703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명예기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